

## 박필 수도지구 (“지구”) 연체로 인한 주거용 수도공급 중단 정책

### 목적

이 정책은 보건안전법 116900 조 0/하수도 공급중단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법”), 이 법은 적어도 60 일 이상 납부가 연체될 때까지는 고객에 대한 주거용 수도 공급의 중단을 금지하고 거주 고객 및 거주지 입주자에게 보호 및 납부 대안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본 정책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출물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14343 Civic Drive, Victorville, CA 92392에 위치한 지구 사무실의 검토 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수도 공급 계정의 연체

고객의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시된 "고지 날짜" 15 일 후 미지급 잔액이 있는 수도요금 계정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부 연기 계획/ 대안적 지불 방법

주거용 고객은 수도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대안적 납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역은 계좌가 연체된 후 60 일이 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3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연체로 인해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1)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복지 및 기관 법 조항 14088 (a) (1)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도 공급 중단이 생명을 위협 할 수 있거나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곳의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1 차 진료 제공자의 인증을 구역에 제출하는 경우
- (2) 고객이 구역에 제출된 서면으로 고객은 정상적인 납부기일 내에 요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재정적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선언하는 경우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의료, 보조 보안 소득 / 주 보조 지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선언하는 경우) 고객은 구역의 일반 납부기일 내에 주거용 수도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
- (3) 고객이 서면 납부연기 계획 (또는 상황이 필요하고 구역의 검토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법에 규정된 다른 대안적 납부 방법)에 가까이 참여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3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주 고객이 제출한 증거 / 정보를 구역이 수신했을 경우, 지구는 수령 후 7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고객에게 (a) 납부연기 계획 (계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연기계획의 대상인 고지서에 나오는 “고지서 일자”로부터 135 일째 되는 날까지 완납되어야 하는) 또는 (b) 지구의 검토 관리자가 승인한 법에 정한 다른 대안적 납부 방법의 조건을 통지하고
- b. 고객에게 납부연기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방법에 동의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고객은 지구가 고객에게 해당 계약을 제공한 날로부터 7 일 (업무 일 기준) 내에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여 지구에 반송해야 합니다.

고객이 위에서 설명한 3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증거 / 정보를 입주 고객이 제출하여 지구에서 수신했을 경우, 지구는 수령 후 7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 (1) 고객에게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 (2) 고객이 납부연기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방법에 대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고객에게 알립니다.

입주 고객이 적시에 지구에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증거 / 정보를 제출하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구가 검토 및 통지 중인 경우, 지구는 수도 공급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가 납부 연기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방법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서면 계약을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고객이 서면 계약에 서명하여 지구에 반환할 때까지 수도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납부 연기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방법에 동의한 고객이 (1) 납부 연기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방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60 일 이상 준수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는 (2) 이후의 각 청구 기간에 60 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된 고지서의 검토 및 항소 요청 방법**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곳에 입주한 성인 또는 주거용 고객이 수도 요금 고지서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요금 고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또는 지구가 연체 및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발송 한 후 13 일 이내에 지구 검토 관리자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이의 제기된 요금고지서의 검토를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 또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검토 관리자가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검토관리자는 이의 제기된 요금고지서 검토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요금고지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입증하는 서면 결정을 우편 또는 직접 전달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된 요금고지서의 검토를 요청한 사람은 전달받은 날 또는 검토 관리자의 서면 결정을 우편으로 보낸 날 기준으로 10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하거나 검토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지구 이사회(이하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지구 총무 역할을 하는 빅터빌 시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구 총무는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에서 그 문제를 심리하게 하고, 그 문제를 심리하는 회합 최소 10 일 전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항소인에게 우송합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동일한 동일한 이의제기된 고지서에 대한 이사회 후속 검토는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는 이의제기된 요금고지서가 검토 중이거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의 권리**

기록 상의 고객이 상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공급 주소")의 입주자가 아닌 경우, 기록 상의 고객이 연체 및 중단 예고 통지서 및 즉각 수도공급중단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일까지 연체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주소의 입주자는 지구의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지구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각 입주자가 공급 약관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고 지구 규칙 및 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입주자에게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입주자가 수도 공급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해 가까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시가 인정하거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선택적으로 공급을 종료하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지구에 있는 경우, 지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수도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 입주자는 이전 기록 상의 고객이 체납하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의 고객 계정 신청은 납부기일 전에 작성하여 서명하고 지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옵션의 논의**

객은 지구 담당자에게 760-955-5001로 전화하여 연체로 인한 주거용 수도 공급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수도 공급 복원하기**

차단 후 수도 공급을 복구하려면 고객은 전화로 또는 지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지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 공급 복구를 하려면 고객 계정에 대한 모든 연체 요금을 납부하고, 차단 또는 재 연결 서비스 요금, 연체료 및 지구 결의서 또는 조례가 요하는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